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가전략기술 기획·육성·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생명연구자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생명연구자원과의 한시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과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

시적으로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관리운영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1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6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3호부터 제66호까지 및 제68호부터 제96호까지를 각각 제64호부터 제67호까지 및 제69호부터 제97호까지로 한다.

21. 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및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사업 추진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공계 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3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56호부터 제96호까지를 각각 제57호부터 제9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기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제36조제2항 후단 중 “70명을”을 “71명을”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812”를 “818”로 하고, 일반직 계 “803”을 “8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74”를 “780”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066”을 각각 “1,05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064”를 “1,056”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별표 5 “3. 제4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삭제하고, “총계 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를 삭제하고, “5급 2”를 삭제하며, “5. 제41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를 삭제하고, “총계 1”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를 삭제하고, 별표 5 “6급 1”을 삭제한다.

별표5 “8. 제41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신설하고, 다음에 “총계 1”를 신설하고, 총계 1 다음에 “일반직 계 1”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다음에 “5급 1”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 및 소속 기관(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은 제외한다)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관리운영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20. (생 략) <u><신 설></u> 21. ~ 61. (생 략) 63. ~ 66. (생 략) 68. ~ 96. (생 략)	제11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0. (현행과 같음) 21. <u>생명공학 관련 첨단기술 및</u> <u>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연구개</u> <u>발 정책 수립 · 사업 추진</u> 22. ~ 62. (현행 제21호부터 제 61호까지와 같음) 64. ~ 67. (현행 제63호부터 제 66호까지와 같음) 69. ~ 97. (현행 제68호부터 제 96호까지와 같음)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u>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u> <u>·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u> <u>립 · 조정</u> 2. ~ 29. (생 략)	제12조(미래인재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u> <u>공계 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u> <u>한 사항</u> 2. ~ 29.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② (생 략)	제13조(정보통신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u>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기반 서비스 활성화</u>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1. ~ 107. (생략)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5. (생략) <u><신설></u> 56. ~ 96. (생략)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2. (생략)	③ ----- --. 1. ~ 19. (현행과 같음) <u><삭제></u> 21. ~ 107. (현행과 같음) 제14조(네트워크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5. (현행과 같음) 56. <u>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서비스 등 정보통신 플랫폼(Platform) 기반 서비스 활성화</u>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7. ~ 97. (현행 제56호부터 제96호까지와 같음) 제18조(과학기술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2. (현행과 같음)
--	---

<신 설>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제40조(생명연구자원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

33.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제36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71명을-----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생명연구자원과를 둔다.

② 생명연구자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현황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시행

2.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

4.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5.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지정·육성

6. 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증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

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④ 생명연구자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한시정원) ① (생 략)

② 삭 제

③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기초·원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④ (생 략)

⑤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및 구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둔다.

⑥·⑦ (생 략)

제41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812</u>		<u>818</u>	+6	
	.		.		.		
	.		.		.		
일반직	계		<u>803</u>		<u>809</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74</u>		<u>780</u>	+6	
	.		.		.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066	1,058	-8
일반직 계	1,066	1,058	-8
3급 또는 4급 이하	1,064	1,056	-8

[별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3. 제4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일반직 계 5급 • •	• • 3. 제41조 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2 2 2 • •	• • <삭 제> <삭 제> <삭 제> • •	-3. 제4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2 -2 -2

5. <u>제41조제5항</u> 관련 <u>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u>	5. <u>제41조</u> <u>제5항</u>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2 년 12월 3 1일)	<삭 제>	-5. 제41 조제5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2 년 12월 31일)
<u>총계</u>	<u>1</u>	<삭 제>	-1
<u>일반직 계</u>	<u>1</u>	<삭 제>	-1
<u>6급</u>	<u>1</u>	<삭 제>	-1
.	.	.	
.	.	.	
8. <u>제41조제8항</u> 관련 <u>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u>	<신 설>	8. <u>제41</u> <u>조제8항</u>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 1일)	+ 8. 제41 조제8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4 년 12월 31일)
<u>총계</u>	<신 설>	<u>1</u>	+1
<u>일반직 계</u>	<신 설>	<u>1</u>	+1
<u>5급</u>	<신 설>	1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1